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① 사 건	전남행심 제2022-066호 보조금 교부결정취소 및 반환통보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청 구 인	② 이 름		
	③ 주 소		
대 리 인	④ 이 름		
	⑤ 주 소		
⑥ 피청구인		⑦ 참 가 인	
⑧ 주 문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각하한다.		
⑨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청구인이 2020. 10. 20. 청구인에게 한 보조금법 위반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청구인이 2020. 10. 20. 청구인에게 한 보조금법 위반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통보와 2021. 12. 17. 청구인에게 한 보조금 미반환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⑩ 이 유	별지에 적은 내용과 같음		
⑪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46조		
위 사건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2022. 7. 29.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이 유

**【제2022-066호, 보조금 교부결정취소 및 반환통보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군 ○○읍 ○○리○○-○번지에서 ○○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청구인이 2016. 추진한 ○○○기계 지원사업(지원기준 국비 30%, 지방비 30%, 자기부담 40%, 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청구의 (주)○○○(이하 ‘이 사건 공급업체’라 한다)로부터 구입하는 비용 ○만원 중 ○만원(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았다.

○○지사는 ○. ○. ○. ~ ○. ○. ○. 이 사건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자기부담금 ○만원을 이 사건 공급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아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공급업체가 청구인의 자기부담금을 대신 부담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0. 10. 20. 청구인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제3호, 제31조 제1항 및 구 「지방재정법」(시행 2020. 9. 10. 법률 제17390호) 제32조의8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보조금 반환처분(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보조금 반환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이 이 사건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20. 12. 3. ~ 2021. 10. 25. 7차례 청구인에게 보조금 반환을 독촉하였고, 2021. 12. 17. 청구인에게 보조금 반납고지서를 재발송하면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예고(이하 ‘이 사건 압류예고통지’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2022. 3. 7.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청구인이 2020. 10. 20. 청구인에게 한 보조금법 위반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청구인이 2020. 10. 20. 청구인에게 한 보조금법 위반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통보와 2021. 12. 17. 청구인에게 한 보조금 미반환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 구 인

1) 사건 경위

청구인은 ○○○을 생산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보조사업에 선정되어 2016. 11.경 이 사건 공급업체에 자기부담금 ○만원을 송금하고 이 사건 기계를 공급받아 ○○○ 생산에 성실히 사용하여 왔다.

청구인은 2019. 11. 27.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하여 ○○○ 생산을 중단함에 따라 이 사건 기계를 다른 ○○○생산업자에게 1년간(2020. 1. 1. ~ 2020. 12. 31.) 임대하였다가 2021. 1.경 반환받아 현재 청구인의 ○○○에 보관하고 있다.

다른 보조사업자들은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피청구인을 속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 형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경찰서 수사결과 보조금 부당 수령자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받지 않았다.

피청구인은 보조사업 이행실태 현지조사 시 이 사건 기계가 청구인 ○○에 없었던 사실과 보조금 부당 수령자에 해당한다는 ○○○도 감사결과만을 근거로 청구인을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다른 보조사업자들과 동일한 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청구인이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법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판례에 따르면,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 제3호 및 제40조 제1호에서 규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두16984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6886 판결 참조).

또한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참조).

○○도 감사결과, 경찰 수사결과,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물품검수서 및 보조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물건을 납품한다는 것이 상

거래 관행상 현실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실수요 보조사업자로서 자기부담금을 실제 부담하여 이 사건 기계를 공급받은 것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조금법 제30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무효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인 이 사건 기계를 피청구인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교환·임대하여 보조금법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를 위반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처분사유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 이후 더 이상 이 사건 기계를 방치할 수 없어 이를 무상 임대하였던 것이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7. 1. 19. 이 사건 공급업체로부터 ○만원의 송금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이전부터 알고 지냈던 이 사건 공급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인 노○○에게 2016. 10. 13. 빌려준 ○만원(노○○이 사용하는 그의 아버지 통장에 입금)을 이 사건 기계 수리비 100만원을 제하고 되돌려 받은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기부담금을 이 사건 공급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아울러 피청구인은 답변서와 보충서면을 통해 청구인을 보조금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재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는 ‘공문서’를 통해 허위의 내용을 적시하면서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청구인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보조금 ○만원 환수)을 받으려 한 공갈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청구인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서에 형사 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판례에 따르면,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 참조), 청구인은 보조금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검찰로 송치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판례 법리(반대해석)에도 반한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사유는 청구인이 자기부담금 ○만원을 부담하지 않았는데도 이 사건 공급업체가 무상으로 ○만원(보조금 ○만원, 자기부담 ○만원) 상당의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해주었다는 것인데, 이 사건 공급업체가 친·인척도 아닌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해줄 리가 만무하다.

청구인은 보조금법 제30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가 아니고 실수요 보조사업자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다른 보조사업자들과 동일하게 취급한 것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보조금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법리오해에 따른 것이므로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피청구인

1) ○○지사는 ○. ○. ○. ~ ○. ○. ○.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기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들이 자기부담금을 실제 부담하였는지 조사하였고, 이 사건 공급업체인 (주)○○○의 직원 노○○이 보조사업자들에게 자기부담금을 직접 입금하거나 지인 명의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되돌려주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공급업체가 자기부담금을 대신 부담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지사는 피청구인에게 보조금 회수 및 형사고발 조치 등을 요청하였다.

2) 피청구인은 2020. 8. 5.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공문을 보냈고, 2020. 8.경 청구인은 의견서

를 제출하였다.

3)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포함한 보조사업자 ○명과 장비공급업체 ○개소를 ○○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결과, ○○경찰서는 ○명의 보조사업자와 장비공급업체 관계자 ○명을 보조금법 위반 및 사기죄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청구인은 경찰조사 결과 검찰로 불송치되었다. 피청구인은 2022. 3. 15. ○○경찰서에 기소 의견 송치에서 제외된 청구인에 대한 수사 결과를 요청하였고, ○○경찰서는 2022. 3. 16. “2016. 11. 30. ○원 잔액이 확인되며 이후 같은 날 3회에 걸쳐 ○만원 2회, ○만원 1회 입금되어 총 ○원이 이체되었고, 자부담금 초과한 경위에 대해 확인한바 잘못 입금되어 추후 현금으로 4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진술을 확인하였기에 참고인을 추가 인지하지 않았다.” 라고 회신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를 보면 2016. 11. 30. 청구인은 이 사건 공급업체에 ○만원 2회, ○만원 1회 입금하고, 2017. 1. 19. 이 사건 공급업체로부터 ○만원 2회, ○만원 1회 입금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자기부담금을 되돌려 받아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이 ○○도 특정감사 결과로 확인되었다.

5) 청구인은 2016. 10. 13. 이 사건 공급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인 노○○의 요청으로 ○만원을 노○○의 아버지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2017. 1. 19. 빌려준 ○만원을 돌려받으면서, 이 사건 기계 수리비 100만원을 제외하고 ○만원을 이 사건 공급업체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노○○ 개인 간의 금전거래를 이 사건 공급업체가 변제할 어떠한 이유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기계는 2016. 11. 30. 공급된 제품으로 2개월 사이에 고장났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고장났다고 하더라도 이행(하자)보증보험 기간이 2016. 12. 9. ~ 2018. 12. 8. 이므로 청구인이 수리비를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다.

6) ○○도 특정감사 시 보조사업자들이 실제 자기부담금을 직접 부담하였

는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위 노○○이 보조사업자들에게 자기부담금을 직접 입금하거나 지인 명의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되돌려주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공급업체가 보조사업자들의 자기부담금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노○○의 자기부담금 대납 진술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도 감사관실에 요청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

7) ○○경찰서는 청구인에 대한 수사 시 2016. 11. 30. 청구인이 이 사건 공급업체에 자기부담금을 입금한 것까지만 인지하고 2017. 1. 19. 이 사건 공급업체가 청구인에게 입금한 부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여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피청구인은 ○○경찰서에 재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8) 이 사건 보조사업 정산 당시인 2016. 11. 30.자 물품검수조서 사진과 청구인이 현재 보관 중인 장비의 사진을 비교하여 보면 서로 다른 기계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분 승인권자의 승인 없이 다른 기계로 교환된 것이라 할 것이다.

9) ○○○산업 육성지원사업에 대해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 시 청구인이 이 사건 기계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후 장비 미보유에 대한 의견 요청에 청구인은 “2020. 2. 기계 고장으로 업체에서 회수해 감. 2020. 7. 15.까지 동일 상품으로 만들어 주기로 함” 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에서는 이 사건 기계를 2020. 1. 1. ~ 2020. 12. 31. 다른 ○○○생산업자에게 빌려주었다고 하여, 위 의견서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피청구인이 2022. 3. 15. 현지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현재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기계와 동일해 보이는 기계가 ○○읍 ○○리 산○○-○에 보관 중인 것을 확인하였다.

10)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공급업체와 공모하여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담한 것처럼 피청구인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납부를 독촉하고, 재산압류를 예고한 것 또한 적법하다.

4. 관계법령

- 1) 보조금법 제30조, 제31조
- 2)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 3)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8조, 제9조
- 4)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27조

5. 판 단

가.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군 ○○읍 ○○리 ○○○-○번지에서 ○○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청구인이 2016. 추진한 ○○○기계 지원사업(지원기준 국비 30%, 지방비 30%, 자기부담 40%)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기계를 청구외 (주)○○○로부터 구입하는 비용 ○만원 중 ○만원(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았다.

2) ○○지사는 ○. ○. ○. ~ ○. ○. ○. 이 사건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자기부담금 ○만원을 이 사건 공급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아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공급업체가 청구인의 자기부담금을 대신 부담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3) 피청구인은 2020. 8. 5. 청구인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반환처분을 사전통지하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렸다.

4) 청구인은 2020. 8.경 피청구인에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며, 형사사건 진행중이므로 법원 판결 시까지 처분을 연기해 주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5) 피청구인은 2020. 10. 20. 청구인에게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 제3호, 제31조 제1항 및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보조금 반환처분을 하였다.

6) 청구인이 이 사건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20. 12. 3. ~ 2021. 10. 25. 7차례 청구인에게 보조금 반환을 독촉하였고, 2021. 12. 17. 청구인에게 보조금 반납고지서를 재발송하면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예고하였다.

7) 청구인은 2022. 3. 7.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서에 따르면, 2016. 10. 13. 청구인 계좌에서 노△△ 계좌로 ○만원이 이체되었고, 2016. 11. 30. 청구인 계좌에서 (주)○○○ 계좌로 ○만원이 이체되었으며, 2017. 1. 19. (주)○○○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만원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9)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이 사건 보조사업에 대한 ○○도 특정감사서류(이 사건 공급업체 직원 노○○의 진술서 및 문답서)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 노○○은 ○○○기계를 공급받은 모든 보조사업자들의 자기부담금을 자신이 대신 부담하였다고 진술·답변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등

1)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1. 7. 25.]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지방재정법】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390호, 2020. 6. 9., 일부개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 [법률 제18658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8조(독촉) ①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3.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서 독촉 절차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0. 3. 24.> 제9조(압류의 요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8조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개정 2020. 3. 2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행정심판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4호, 2020. 6. 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판 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청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누락하였고, 다른 보조사업자들과 달리 청구인은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였으므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청구인이 2020. 8.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였고, 이에 응하여 청구인이 2020. 8.경 의견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서에 따르면, 2016.

11. 30. 자기부담금 상당의 ○만원이 이 사건 공급업체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2017. 1. 19. ○만원이 이 사건 공급업체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2017. 1. 19. 이 사건 공급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만원이 이 사건 공급업체 직원 노○○과의 별도 금전거래 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보조사업에 대한 ○○○도 특정감사 시 위 노○○은 청구인을 포함한 모든 보조사업자들의 자기부담금을 대신 부담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청구인이 인용한 판례(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는 형사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것으로, 경찰조사 후 검찰에 송치되지 아니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청구인의 경우에 원용할 것은 아니며, 경찰이 청구인의 범죄혐의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곧 청구인이 보조금법령 등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자기부담금 부담조건에 동의해서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 이를 교부받고 그 후 자기부담금을 되돌려 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 제3호 및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처분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이 사건 처분 및 압류예고통지의 취소청구)

(1) 먼저, 예비적 청구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제1항),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되,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제3항),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제6항).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심판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어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 처분서는 2020. 10. 21.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고,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그 무렵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청구인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 때를 처분이 있었던 날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참조), 2022. 3. 7.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 청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2)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 중 이 사건 압류예고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뜻하는 것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563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사건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조금 반환을 독촉하면서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안내한 이 사건 압류예고통지는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단순히 통지한 것으로 그것만으로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예고통지의 취소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 중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